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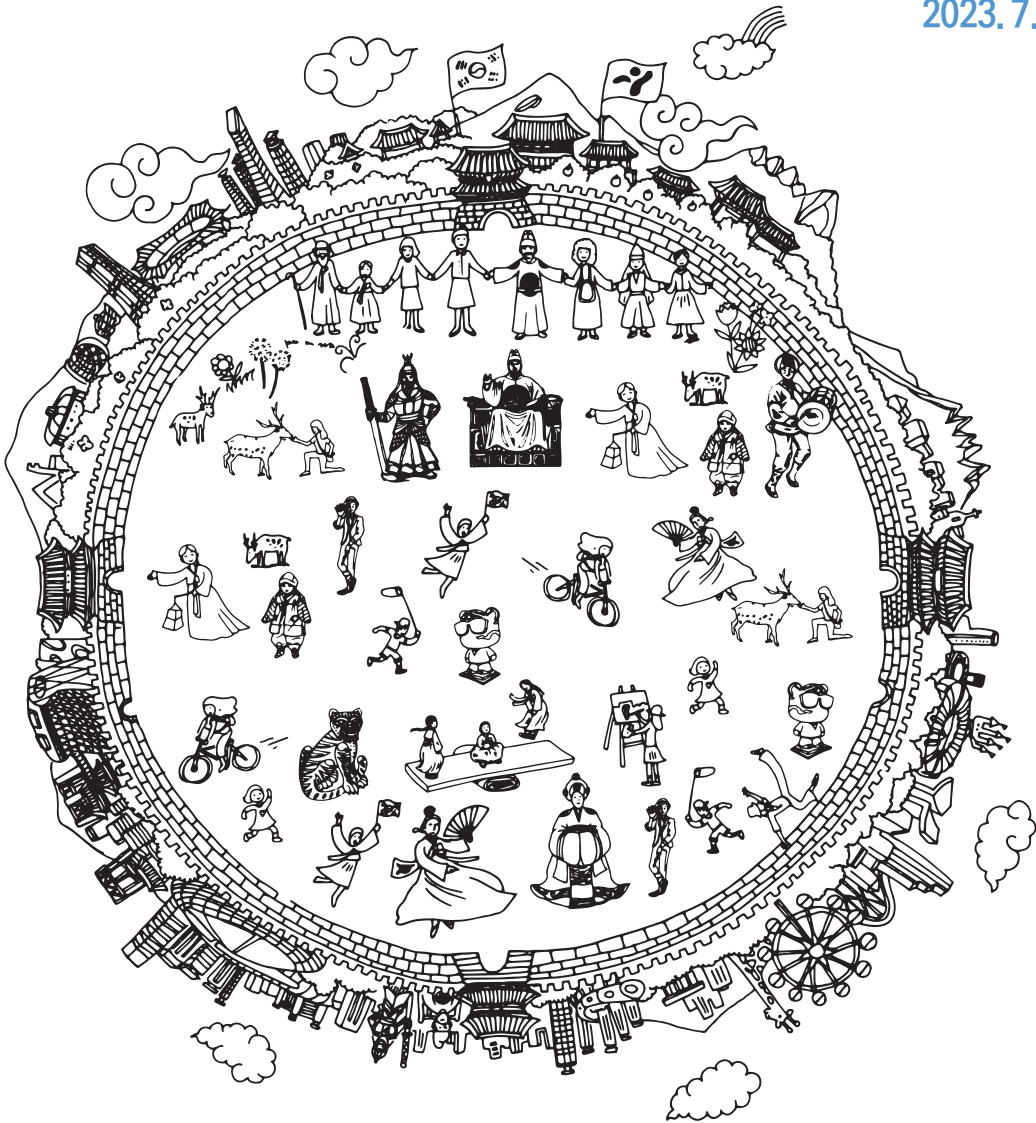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92호
2023. 7. 24.(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8838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8839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8840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제8841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884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8843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8844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8845호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5
제8846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8847호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8848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884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8850호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8851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8852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8853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제8854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제8855호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8856호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8857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8858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8859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3
제8860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886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8862호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89
제8863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예 규]

제736호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04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3 - 22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8
제2023 - 223호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2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838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에 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제1호 중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법 제5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제7조제1항제1호 중 “공공개발기획단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개발추진반장”을 “공공자산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개발기획단”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부분 중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개발기획단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공공개발추진반장”을 “공공자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 마을공동체”를 “도시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없는”을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대신한다”를 “대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신설로 기금을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 및 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시 내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로 변경함.

나. 기금명을 기반시설설치기금에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으로 변경(제1조, 제3조).

다. 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을 재원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비로 활용(제5조, 제6조).

라. 기금의 운용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함(제7조).

마.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제8조 내지 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39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아동담당관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복지법」 제15조	구청장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제56조	구청장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공정경제담당관	1.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폐업 등의 명령·직권말소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제6항	
	나. 정기 검사증인 표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	
	다. 부정계량기의 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2조	
	라. 과징금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제4항	
	마. 지위승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바. 청 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	
	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생활용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나. 생활용품의 보고 및 검사 등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3	구청장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3조	구청장
	4. 대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 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목까지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	
	나. 분실신고 및 폐업신고	○ 대부업법 제3조의 3, 제5조	
	다. 검사 등	○ 대부업법 제12조	
	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대부업법 제13조	
	마. 실태조사 등	○ 대부업법 제16조	
	바. 등록수수료 등 징수	○ 대부업법 제17조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대부업법 제21조	
	아.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감독	○ 대부업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5.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다.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이의 신청 라.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6.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가. 설립신고 나. 정관변경 신고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해산신고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바. 신고확인증 발급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구청장 구청장
농수산유통담당관	1.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 기획조정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창의행정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교육공무원법」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대학교총장

□ 경제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전략산업기반과	1.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서울시가 직접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는 제외) 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고시 다. 개발토지의 분양·임대업무 위탁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라목까지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 산업집적법 제33조 ○ 산업집적법 제36조 ○ 산업집적법 제37조제2항	구청장

□ 복지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등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다.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 변경 및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 라.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신원조회 포함) 마. 감사의 추천 바.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6항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제7항 ○ 「사회복지사업법」제24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기증물품의 용도증명 발급	○ 「관세법」 제91조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	구청장

☐ 도시교통실[illegible]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 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및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인 합병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11. 차령의 연장 (차령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 위반 내용란 중 제9호, 제10호가목, 나목, 제15호가목, 나목, 제16호가목, 제26호가목, 마목 및 제29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 15.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16.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13조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 여객자동차법 제16조 ○ 「여객자동차법」 제8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88조, 제94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택시정책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16호까지 '여객자동차법'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수리 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반환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봉인 2.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멸실된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나. 자동차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재교부 다. 등록의 거부 라.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의 부착 및 떼는 허가 마. 변경등록의 처리 바. 이전등록의 처리 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및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아. 직권에 의한 자동차 말소 등록, 직권말소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자동차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또는 폐기	이라 한다) 제89조 ○「자동차관리법」제7조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8조제2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4조제2항 ○「자동차관리법」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6항 ○「자동차관리법」제10조 ○「자동차관리법」제11조 ○「자동차관리법」제12조 ○「자동차관리법」제13조,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6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말소 등록을 신청한 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수리 처리 차. 압류등록의 처리 카.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부여 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 파.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 「자동차관리법」 제14조 ○ 「자동차관리법」 제16조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제2항 · 제4항 ○ 「자동차관리법」 제28조	
	3. 일반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89조	구청장
	4. 일반 · 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보고, 명령, 검사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구청장
	5. 자동차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구청장
	6.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3조	구청장
	7.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징금의 부과 · 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7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3호	구청장
	8. 청문(시 사무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4호	구청장
	9.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5호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0. 자동차 검사 기간의 조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75조	구청장
	11.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영업행위 단속 (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단속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17조	구청장
	1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구청장
	가. 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28조	
	나. 등록의 취소 등	○ 여객자동차법 제85조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 여객자동차법 제35조	
	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	○ 여객자동차법 제31조	
	마. 사업개선명령	○ 여객자동차법 제33조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 여객자동차법 제32조	
	사. 법인의 합병인가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 35조	
	아. 양도·양수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14조, 제 35조	
	자. 상속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제15조, 제 35조	
	차. 청문	○ 여객자동차법 제86조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88조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94조	
	파. 휴업·폐업의 신고	○ 여객자동차법 16조제2항, 제35조	
	하. 보고·검사 등	○ 여객자동차법 제79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차계획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법 제45조제1항 ○ 여객자동차법 제94조제2항 제9호	구청장
물류정책과	1.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용신고 나. 임대허가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처분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4.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 같은 법 제5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교통운영과	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가. 서울특별시도상의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나. 서울특별시도상의 교량·터널·고가차도·입체교차·지하차도 등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 「도로법」 제55조	구청장 도로사업소장
교통지도과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 「도로교통법」 제143조, 제161조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구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후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자원순환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1. 환경기술인 교육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녹색에너지과	1.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특정 가스 사용시설 사용자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석유판매업 등록(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업 제외)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수리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 수리 라.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10호까지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0조 ○ 석유사업법 제11조 ○ 석유사업법 제12조 ○ 석유사업법 제13조제3항 ○ 석유사업법 제14조제1항제3호 ○ 석유사업법 제30조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보고 및 검사 아. 청 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제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다. 과징금 부과·징수 라. 보고 및 검사 마. 청 문 바. 과태료 부과·징수 4.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다.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31조제1항·제39조제7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3)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5.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	○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 ○ 석유사업법 제40조 ○ 석유사업법 제49조 제3항 ○ 석유사업법 제33조 ○ 석유사업법 제34조 ○ 석유사업법 제35조제1항 ○ 석유사업법 제38조제1항 ○ 석유사업법 제40조 ○ 석유사업법 제49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 제38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제1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제9호, 제9의4호 및 제5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제12호, 제5항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 ○ 「전기사업법」 제71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6.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신고필증 발급 다. 취소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 제3호, 제2항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3항 ○ 「전기사업법」 제73조의6	구청장
	7. 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기술수준에의 적합 명령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전기사업법」 제71조 ○ 「전기사업법」 제108조	구청장
	8. 「전기공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정명령 등 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전기공사업법」 제27조 ○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 「전기공사업법」 제29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전기공사업법」 제46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	구청장
	9.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제9항,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구청장
	10.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나. 보고·검사 또는 질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령 제16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3	
대기정책과	1.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항공유 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 조치명령 및 항공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 승인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조치명령 및 연료사용 승인 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억제시설의 설치 조치 이행,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 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신고수리, 배출 시설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조치 명령 마.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사. 청 문 2. 측정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나.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다. 등록취소시 청문 라. 과태료 부과 3.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과 관련된 다음의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제4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5호까지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7조 ○ 환경시험검사법 제28조 ○ 환경시험검사법 제29조 ○ 환경시험검사법 제35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illegible]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 취소, 휴업·폐업 등의 신고 나.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승인 다. 과징금의 처분 등 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 마.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처리이행보증, 처리 명령, 처리책임의 승계 및 조치 등 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사.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아. 청문의 실시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4호까지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제22조·제25조 및 제33조 ○ 건설폐기물법 제23조 ○ 건설폐기물법 제26조 ○ 건설폐기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건설폐기물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 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 건설폐기물법 제31조 ○ 건설폐기물법 제57조 ○ 건설폐기물법 제66조	
	3.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폐기물관리법」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구청장
	4.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 「폐기물관리법」제5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구청장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의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 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생활환경과	1. 소음·진동규제의 별칙 중 과태료 부과·징수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구청장
	2. 폐기물 처리업 및 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집·운반법, 재활용업에 한함)		구청장
	가. 허가 및 변경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1조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라. 보고·검사 등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한강사업본부장, 관할공원여가센터소장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구청장
	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나.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무 가.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 나.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2호까지 '전통사찰법'이라 한다) 제4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2호까지 '전통사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 전통사찰법 제9조, 제9조의2, 전통사찰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구청장
문화예술과	1.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나. 폐업 및 직권 말소 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 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 마. 영업의 승계신고 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 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명령 등 아. 직권취소 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카목까지 '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15조 ○ 정기간행물법 제17조 ○ 정기간행물법 제18조 ○ 정기간행물법 제21조 ○ 정기간행물법 제22조 ○ 정기간행물법 제23조 ○ 정기간행물법 제24조 ○ 정기간행물법 제25조 ○ 정기간행물법 제26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차. 청문의 실시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정기간행물법 제27조 ○ 정기간행물법 제33조	

□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정책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다. 회원모집계획서 접수·처리 라.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통보 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자. 과태료 부과·징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목까지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2조 ○ 체육시설법 제14조 ○ 체육시설법 제17조 ○ 체육시설법 제19조 ○ 체육시설법 제27조 ○ 체육시설법 제28조 ○ 체육시설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 체육시설법 제36조 ○ 체육시설법 제40조	구청장

□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정책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나. 병원 등의 변경 허가 다. 지도와 명령	○ 「의료법」 제33조제4항 ○ 「의료법」 제33조제5항 ○ 「의료법」 제59조제1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나.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 「의료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구청장
	3.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출입·검사와 수거 나.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마약류관리법 제41조 ○ 마약류관리법 제42조, 제43조 ○ 마약류관리법 제50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 마약류관리법 제69조 및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구청장
	4.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 「약사법」 제69조 ○ 「약사법」 제71조 ○ 「약사법」 제73조 ○ 「약사법」 제74조 ○ 「약사법」 제76조의2 ○ 「약사법」 제81조 ○ 「약사법」 제98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48조제1항,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51조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48조제3항, 「의료법 시행령」 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51조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49조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6.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나.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허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다. 응급환자 이송업 변경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라. 응급환자 이송업 휴·폐업, 재개업신고 마. 응급환자 이송업 지위승계 신고 바. 과태료 부과·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스마트건강과	1.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징수(「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관리가 위임된 도시공원은 제외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4호	구청장
식품정책과	1.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 가 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사항 다.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라. 허가의 취소 마. 과징금 처분 바. 감독 (1) 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압류·폐기 또는 회수 2.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련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 또는 조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29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6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구청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염 또는 함수제조의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 등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 제26조, 제57조	구청장

□ 행 정 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사과	1.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소속 5급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가. 해당기관(4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내 전보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2.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 포함)「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가. 당해 기관내 전보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3.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의2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당해 보조기관의장 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당해 기관내 전보 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 다. 호봉 승급		

□ 안전총괄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설혁신과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신규등록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등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다. 등록의 갱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8조	
	라. 등록의 말소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바. 건설기계 저장권 설정등록 및 변경·이전·말소등록 등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제6조제1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항	
	사. 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5.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나. 검사의 최고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라. 기간연장 6.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8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도로계획과	1.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	○ 「도로법」 제36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2.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 「도로법」 제31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 (단, 확장하여 노폭 20m 이상이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다.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도로법」 제81조	구청장
도로관리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청 앞 광장 제외) 가. 도로의 점용허가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도로법」 제61조 ○ 「도로법」 제66조 ○ 「도로법」 제72조 ○ 「도로법」 제117조	구청장

☐ 주택정책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택정책과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2.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3.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주택법」 제15조, 제16조 ○ 「주택법」 제43조, 제44조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공공주택과	1.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및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안에서의 미매각 토지의 사용 등 허가와 토지관리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구청장
공동주택지원과	1.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공동주택관리법」제69조제1항	
	2.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주택법」제94조	구청장
건축기획과	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검 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	
	나.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82조의 승강기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사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제5항	
	2.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무		구청장
	가. 건축사업 신고수리·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 수리	○「건축사법」 제23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업무 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건축사법」 제28조 및 제28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건축사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7호)	
	라. 보고 및 검사	○「건축사법」 제30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8호)	
	마. 과태료 부과·징수(「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	○「건축사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0호)	
	바. 처분내용의 통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 도시계획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토지관리과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및 제96조	구청장
	2.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대한 다음의 사무(다만, 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구청장
	가. 연수교육 실시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나.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다. 연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통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균형발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정비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구청장

□ 푸른도시여가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경과	1. 도로구역 내 녹지대(이하 이 란에서 “녹지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 자동차전용도로 녹지대는 제외)	○ 「도로법」 제31조	구청장
	2. 세종대로(광화문삼거리~대한문 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31조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
	3.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31조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4. 도시계획시설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특별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6호까지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36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나.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명령 다. 녹지 점용료의 부과·징수(강제징수 포함) 5.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녹지활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녹지활용계약 대상지 내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녹화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녹화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나.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 구역의 관리	○ 공원녹지법 제38조 ○ 공원녹지법 제41조, 제43조 ○ 공원녹지법 제12조 ○ 공원녹지법 제13조	관할 공원여가센터소 장, 구청장 구청장
자연생태과	1. 방제명령 등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관리(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 3.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 등 나. 지정서 교부 다. 지정 취소	○ 「산림보호법」 제24조제2항, 제3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제2항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제3항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 「축산법」 제12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시설변경 다. 등록증 재발급 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 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업무감독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아. 승계신고 자. 폐기 등의 조치 차. 청문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 「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사료관리법」 제25조 ○ 「사료관리법」 제26조 및 제36조 ○ 「사료관리법」 제27조 ○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 ○ 「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 ○ 「사료관리법」 제24조 ○ 「사료관리법」 제30조	구청장

☐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치수안전과	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하천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 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등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 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 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하천법」 제5조 ○ 「하천법」 제15조 ○ 「하천법」 제14조 ○ 「하천법」 제52조 ○ 「하천법」 제30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 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 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자.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차. 잘못 납부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 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 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 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 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 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 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머.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 베틀.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 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어.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 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청	○ 「하천법」 제30조 ○ 「하천법」 제33조 ○ 「하천법」 제36조 ○ 「하천법」 제38조 ○ 「하천법」 제68조 ○ 「하천법」 제69조 ○ 「하천법」 제70조 ○ 「하천법」 제72조 ○ 「하천법」 제90조 ○ 「하천법」 제47조 ○ 「하천법」 제48조 ○ 「하천법」 제76조 ○ 「하천법」 제77조 ○ 「하천법」 제78조 ○ 「하천법」 제84조, 제85조, 제86조 ○ 「하천법」 제91조 ○ 「하천법」 제98조	구청장(다만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계천 제외지는 제외한다) 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다. 점용료 등의 감면 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청 명칭 첨가)	○ 「하천법」 제27조 ○ 「하천법」 제37조 ○ 「하천법」 제37조 ○ 「하천법」 제67조 ○ 「하천법」 제46조 ○ 같은법 제10조제6항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 구청장
물재생계획과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간선 하수도 및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하수도 제외)	○ 「하수도법」 제1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구청장
물재생시설과	1.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2. 장부의 기록·보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3. 점용허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4. 배수설비의 설치 등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5. 제해시설의 설치 등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6. 배수설비 등의 검사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7. 방류수수질기준 (차집관로 관련 사항으로 한정함) 8.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 「하수도법」 제26조 ○ 「하수도법」 제68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9조 ○ 「하수도법」 제24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19조 ○ 「하수도법」 제27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 「하수도법」 제23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18조 ○ 「하수도법」 제31조 ○ 「하수도법」 제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물재생센터 소 장 물재생센터 소 장 물재생센터 소 장 물재생센터 소 장 물재생센터 소 장 물재생센터 소 장 물재생센터 소 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 「물환경보전법」 제23조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방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나. 과징금 처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32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소방서장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지위승계 신고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마. 과징금 처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목까지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9조 ○ 소방시설법 제31조 ○ 소방시설법 제32조 ○ 소방시설법 제35조, 제49조 ○ 소방시설법 제36조	소방서장
	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소방서장
	4.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구청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등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차지방일괄이양 등에 따라 마약류취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 위임규정 삭제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법령 및 사무명 변경

다.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의 주관부서 변경

◆ 서울특별시조례 제8840호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을 “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으로, “ 외국인투자의 ”를 “ 외국인투자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정의는 ”을 “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 외국인투자 ”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 영 ”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 대규모투자사업 ”을 “ 대규모 투자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지급 ”을 “ 지원 ”으로 한다.

제7조 중 “ 범위안에서 지급 ”을 “ 범위에서 지원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 지급 ”을 “ 지원 ”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범위안에서 지급 ”을 “ 범위에서 지원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를 “ 외국인투자기업에 ”로 하며, “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를 “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에 대하여 ”를 “ 에게 ”로, “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를 “ 에 따라 ”로 한다.

제13조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5조 중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으로 한다.

제16조 중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중 “사용 등 관리”를 “사용·관리”로, “대하여 관련자료”를 “관련 자료”로, “그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참작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정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외국인투자·관광·홍보 등을 위한 시책 자문기구로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이 신설됨에 따라(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국인투자자문회의’ 관련 규정 삭제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정의의 인용조문 현행화(제2조제4호)

나. 외국인투자자문회의의 근거규정 삭제(제3조)

다. 기타 띄어쓰기, 맞춤법 등 용어정비(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41호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9조의4제5호 중 “제9조의3제1항의 사유”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제척사유”로 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5(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시장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9조의6 중 “2023년 9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 상생발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상설 운영에서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고,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명직 위원 규정 삭제(제9조제4항제2호)

나. 위원회 임기 및 연임 규정 삭제(제9조제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42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2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에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완화 받는 용적률은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고시하는 혁신성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4 제2호 중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의 받아야 한다”를 “경우와 용도지구 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결정·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별표4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경우”를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층수변경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 획지면적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

별표4 제4호머목을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을 버목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을 머목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한다.

별표4 제4호에 차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버목(종전의 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서목(종전의 머목) 중 “제2호 각 목”을 “제2호”로 한다.

차.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친환경 에너지 상한용적률에 한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러.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버. 건축물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의 변경(다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는 제외한다)

별표 4에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무 명	관계법령
9. 법 제7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에 관한 사무	○ 법 제78조제7항제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대학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대학 내 공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함
- 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근거를 삭제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1항과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
- 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중요도와 무관하게 결정권한이 상향되어 있어 市 심의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학 내 세부시설조성계획으로 정하는 혁신성장 용도 도입 시 조례 용적률의 120퍼센트 완화(제55조제25항)
- 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용도지구 내 자치구 권한위임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범위 결정(변경) 시 시장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규정(제39조5항 및 별표4)
- 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 변경·추가(별표4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843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조사연구”를 “조사·기술개발·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기술개발·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제1조의 목적달성”을 “도시문제 해결”로 한다.

3.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기술개발·연구
4.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제4조제1항 중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을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로, “줄”을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연구원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연구원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조제4항제4호 중 “사회적 학식”을 “학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총괄한다”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감사한다”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을 “(조사 등의 위탁 및 자료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을 “각종 조사·기술개발·연구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조사·연구”를 “조사·기술개발·연구”로 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7조의 규정은 서울기술연구원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선임직 이사·감사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연구원의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외 직원 포함)은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각종 근로조건은 서울연구원의 정관과 제 규정을 따른다.

③ 제2항에 대한 각종 근로조건은 단일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는 직원이 보수 수준과 관련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구원의 직원이 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대외적으로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와 법률관계는 서울연구원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기술연구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서울연구원의 사업으로 본다.

제5조(재산의 승계) 서울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서울연구원이 승계한다.

제6조(통합지원단 설치)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에 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7호바목을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를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2년 제9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2022. 12. 23.) 의결에 따라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기관통합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 정책연구와 기술과학 분야 융복합 혁신연구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시민의 삶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대안 연구기관으로 재탄생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업(제3조)

- 산업 및 기업연계 기술발전을 위한 조사·기술개발·연구, 국내외 선진 우수기술 발굴·평가·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 서울기술연구원의 사업 포함

나. 기금 및 출연금(제4조)

- 시설·운영경비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출연 가능
-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연구원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다. 서울기술연구원 조례 폐지(부칙 제2조)

- 서울연구원과의 통합에 따라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라. 임직원에 대한 조치(부칙 제3조)

-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기술연구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봄.
- 서울기술연구원에 재직하던 모든 직원(정원외 직원 포함)은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근로계약 방식과 보수체계, 승진 등 각종 근로조건은 서울연구원의 정관과 제 규정을 따름
- 각종 근로조건은 단일화함
- 서울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는 직원이 보수 수준과 관련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결정 가능
- 서울연구원의 직원이 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마. 경과조치(부칙 제4조)

- 서울기술연구원이 대외적으로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와 법률관계는 서울연구원이 승계
- 서울기술연구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서울연구원의 사업으로 봄

바. 재산승계(부칙 제5조)

- 서울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서울연구원이 승계

사. 통합지원단 설치(부칙 제6조)

- 서울연구원 및 서울기술연구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통합과정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에 통합지원단을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조례 제8844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 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연장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원회명	
설치근거	※ 법령상 위원회일 경우 법령, 조례 모두 기재
설치목적	○ -
설치 필요성	
위원회 성격	자문(), 심의(), 의결() ※ 여러 성격 동시에 가질 경우 중복 표기
설치요건 부합 여부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부합여부 상세 기재
기존 위원회와 중복·유사 여부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존재 (유□, 무□)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유□, 무□)
상설위원회 설치요건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 부합여부 상세 기재
위원회 필수 구성내용을 조례에 반영 여부	☐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 위원의 구성 및 임기(임기는 상설위원회만 규정) ☐ 존속기한(법령상 강행 위원회 제외) ※ 존속기한 5년 이내 ☐ 위원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 회의 소집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첨부자료 (담당부서만 제출)	- 관련 조례 제·개정안 - 위원회 설치요건 부합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자료 등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지양하고, 위원회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신설검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경우 연장 여부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및 예외 규정을 신설함(제6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 나. 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조례 제·개정 시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신설검토서 작성을 규정함(의원발의안은 제외)(제7조제2항)
- 다. 위원회 존속 기한 연장의 경우 연장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845호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이하 “정책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국제도시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제사회에서 서울시의 역할 및 역할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관광·홍보 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자격 및 해촉) ① 정책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각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저명인사
 2. 세계적 지명도가 있는 학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정책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책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책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운영방법) 시장은 정책고문에게 개별 또는 분야별로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정책고문의 협력사항) ① 정책고문은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나 국제행사(이하 “국제회의등”이라 한다)에 시장이 초청할 경우 해당 국제회의등에 참석하여 토론회나 강연 등에 참여한다.

- ② 정책고문은 서울시 주요 정책 해외홍보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한다.

제6조(의견요청 등) ① 정책고문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견요청 등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고문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제공 등) ① 시장은 국제회의등에 정책고문을 초청하는 경우 해당 정책고문 및 동반자 1명에 한해서 국제회의 등과 관련된 숙소, 교통, 그 밖에 회의 참석에 필요한 경비지원 등 각종 편의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시가 개최하는 국제회의등에 참석하는 정책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자문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대한 예산을 지출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집행한다.

제8조(정책고문의 제척·회피) ① 정책고문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문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정책고문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기존에 경제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제경제자문단’의 자문 범위를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문기구인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을 설치
- ‘정책고문’의 기능 및 자격,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떨어지는 「서울특별시 국제경제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을 설치함(제1조).
- 나.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을 규정함(제2조).
- 다. 국제 정책고문의 자격과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라. 국제 정책고문의 운영방법을 규정함(제4조).
- 마. 국제 정책고문의 협력사항을 규정함(제5조).
- 바. 국제 정책고문의 서울시 공무원 등에 대한 의견·자료 요청 근거를 규정함(제6조).
- 사. 국제 정책고문에 대한 경비지원 등 편의사항과 연구비, 자문수당, 여비 등의 지급근거를 규정함(제7조).
- 아. 국제 정책고문의 공정한 자문을 위한 제척·회피 사항을 규정함(제8조).
- 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46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에 대하여 사업용”을 “에 사업용”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사후관리)”를 “(보조금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 등 관리”를 “사용·관리”로, “그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조제4호의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기타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게”로 한다.

제20조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21조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원화에 따라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며,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대상 경진대회 개최 근거 신설 등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사회적금융 수행 기관 정의 규정 삭제(제2조)
- 나. 사회적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특례규정 삭제(제10조 삭제)
- 다. 사업부서별 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원화에 따라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아래에 설치된 보조금심의 실무위원회 규정 삭제(제13조 삭제)
- 라.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에 대한 행사 등을 개최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한 보상 근거규정 마련(제15조)
- 마. 한글 맞춤법 등에 따른 조문상의 표기 정비(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47호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이산가족의 날) 시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제1항”을 “제5조 및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신설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 이산가족의 날 ’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제5조 및 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48호**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단체·법인”을 “노동단체”로 한다.

제4조의 제목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단체·법인”을 “노동단체”로 하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노동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노동단체는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① 시장은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이미 교부되었을 때에는 해당하는 보조금과 반환 전까지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시장은 노동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고, 납부기한 내에 제재부가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중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우리나라 양대노총인 한국노동총연맹(한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백만명이 넘는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회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시스템이 없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서울시는 여기에 발맞춰 노동단체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적보고, 회계감사, 성과평가,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을 명시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통일적 사용을 위해 “단체·법인”을 “노동단체”로 변경함(제3조).
- 나. 조의 제목 '지원범위'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회계감사(당해연도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성과평가를 신설함(제4조).
- 다. 보조금의 신청, 교부,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4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2호나목 중 “녹지”를 “녹지, 공공공지, 광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용주차장

제6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을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8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을 “추진위원장, 조합장 또는 청산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추진사항”을 “추진사항(다만,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합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1항제4호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인이 제출한다.

조례 제689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서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에 ‘ 공공공지, 광장, 공용주차장 ’을 추가하여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재개발구역 주변 저층주거지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정비사업 유형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정비사업방식에 따라 이를 명확히 분리·운영하여 사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합장 또는 청산인이 공공지원자에게 6개월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여, 청산금 미지급, 지속적인 경비 지출 등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조합 해산 및 청산을 유도하여 공공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함.

2. 주요내용

- 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대상에 광장, 공공공지, 공용주차장을 추가(제52조)
- 나.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때까지 정비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한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함(조례 제6899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삭제).
- 다. 조합 해산 또는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합장 또는 청산인이 공공지원자에게 6개월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매 반기가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함(제86조제2항, 제62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50호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관리

제12조제2항제1호 중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을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및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형소공인에 관한”을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물,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시형소공인은 서울시 전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이유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전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시형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됨.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 활성화,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노후장비 교체 및 작업장 디지털화 등 도시형소공인의 사업장과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시 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 활성화 및 도시형소공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3조)
- 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해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에서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및 조사와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관련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제12조)
- 라. 노후 장비 교체 및 시제품 개발, 작업장 디지털화 등 도시형소공인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51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청소년”을 “청소년·청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 중 청년의 경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는 문제, 정체성과 취업과 같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나, 현행 조례상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상위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여 청년인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대상에 청년을 추가함 (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52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40조의2제4항”을 “법 제48조제5항 및 영 제40조의2제4항”으로, “다른 거점사업의”를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2의 제목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를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9조2제3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⑥ 법 제49조2제5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⑦ 법 제49조2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정법률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거점사업과 그 외의 사업이 모두 포함되므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시행’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최소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함(제49조의2).
- 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용적률 특례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제50조, 제50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853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시장 또는 위원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비상설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시마다 상정안전 분야 위원으로 위원변경(위촉)이 가능하므로, 안전 분야 특별위원 추가 위촉 규정을 삭제함(제13조제1항).
- 나.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의결 후 위원회를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제13조제3항).
- 다. 임시위원장 선출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2항).
- 라. 위원장의 회의 소집 규정을 삭제함(제14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54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함(제8조제5항).
- 나. 안전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제8조제6항 신설).
-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9조, 제10조).
- 라. 위원회의 정기·수시 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마. 위원회 운영에 관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함(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55호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소비자정책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안전 심의·의결 후 위원회를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며 심의사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대체 가능한 부분은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제13조제4항).
- 나.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함(제13조제5항).
- 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민, 소비자단체, 연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라. 위원회의 정기·임시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6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856호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그 시정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속하게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요청과 그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
 - 2.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경영지도
 - 3.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사업
-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여성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공공기관의 평가 반영) 시장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통해 여성기업의 활성화에 노력해 왔으나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사항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적극적인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여성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시책 추진사항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포상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여성기업에 차별적 관행 및 시정 개선에 대해 명확히 함(제5조).
- 나. 여성기업 우대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제9조).
- 다.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라.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57호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역세권의”을 “역세권등의”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의2호에 따라 역세권등에서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비주거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 설치 및 복합 건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역세권등"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 지역 또는 간선도로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기여”란 구체적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기여시설"이라 한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역세권에”을 “역세권등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만, 정비예정구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은 예외로 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예외로 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제8조의 제목 “(용도지역 조정 기준 및 한계)”를 “(용도지역 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조정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공공기여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역세권 이용 범위의 확대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 범위를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에서 350m로 확대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역세권과 다름 없는 교통여건과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간선도로변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의 중심지 체계를 실현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고,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활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개정 시행(2021.7.13.)됨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 관련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역세권 적용범위 확대 및 역세권 경계 조정(제2조)

- 역세권 이용 범위 검토 및 관련 사업(장기전세, 청년주택)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역세권 범위는 350m 이내로 확대하고, 형태는 박스형으로 통일
- 중심지 체계 및 대중교통 이용 편리 등 역세권 현황에 따라 지 역중심 이상은 350m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관리하여 선제적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중심 이상이 아닌 ‘환승역’도 350m로 범위를 확대하여 중심성 확보

나. 사업대상지에 간선도로변 포함(제1조, 제2조, 제5조)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체계 실현 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간선도로변을 사업대상지에 포함
-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서 시장이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역세권등’으로 정의

다. 사업대상지에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 포함(제5조)

- 타 사업과의 정합성 확보 및 지역의 개발 잠재력 활용, 지역 환경개선 등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관리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사업대상지에 포함

라. 공공기여 방식 다양화(제1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서울특별시조례 제8858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0월 제정·시행되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시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단장으로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단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 간 상충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원봉사센터 사업 범위에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추가함(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59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회”라 하고, 내용 중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3(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추천) 서울특별시의회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 의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원 추천 시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性) 편중 방지 및 직종 다양화를 이루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조항 신설(제4조의2 제2항 및 제3항)
- 나. 위원구성협의체 운영 조항 신설(제4조의2 제4항부터 제6항)
- 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4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8860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를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 2.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4.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 23.3.27.)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희망경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6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법 제9조의 편의시설”을 “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며, 법 제9조의 편의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8조의 최저주거기준 적용 확대 및 개선방안과 법 제9조의 안전기준 적용 확대에 대한 사항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8조와 제9조의 기준 적용현황 및 주거약자의 편의수요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주거약자에 대한 강화된 주거기준과 안전기준을 서울시 주거약자 정책에도 반영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복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호).
- 나. 주거실태조사와 주거기본계획 수립에 최저주거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주거약자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함(제4조 및 제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862호**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 위촉 해제 및 회의 개최 통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중 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5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빚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빚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5일”을 “15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 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2일”을 “15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제4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3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본문 중 “3일”을 “15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를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5일”을 “15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0조(「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해제”를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7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8조(「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병원장은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1조(「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2조(「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4조(「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6조(「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7조(「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8조(「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0조(「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2조(「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3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6조(「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7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48조(「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9조(「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50조(「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1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2조(「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53조(「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4조(「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5조(「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58조(「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9조(「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60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1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2조(「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63조(「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64조(「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65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66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년 단위(위촉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제7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1. 위원의 1년 단위 참석대상 회의 개최 횟수가 1회인 경우
2. 잔여임기 1년 미만 등으로 1년 단위 출석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67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 중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9조(「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0조(「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위원 위촉 해제)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1조(「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3일”을 “15일”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3일”을 “15일”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3일”을 “15일”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3일”을 “15일”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10일”을 “15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5일전”을 “15일전”으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7일전”을 “15일 전”으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촉 해제)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5조(「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5일”을 “15일”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 위촉해제 및 회의 개최 통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 중 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조례마다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이 일정하지 않아 법령 및 해당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 이외에는 위촉해제 규정 내용을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위원 위촉 해제 규정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일괄 정비함.
- 나. 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일을 15일 전으로 일괄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863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12월”을 “1월”로, “차기”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시기가 상위 법령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 각 지자체에서 수립·제출하도록 규정한 시기와 서로 다른바, 법령과 일치시켜 실무 혼선을 막고 행정 효율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 시책 및 육성계획의 수립 시기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로 수정(제7조).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 제736호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메시지민원 처리시스템별로”를 “제3조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메시지민원의 처리는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통민원 및 처리기한이 ‘즉시 처리’인 현장민원의 경우 담당자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반복민원의 처리) ① 반복민원을 종결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하되, 최초 종결처리 시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회신 없이 종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종결처리는 1·2차 답변 결재자의 차상급자 이상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사부서”를 “관리부서”로, “하며,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 이행상태가 우수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기관·부서 등에 표창할 수 있으며,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장민원 처리기준(제5조제1항제1호와관련)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1	교통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		
2		거주자우선주차위반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 견인	●		
3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	
4		방치차량	방치차량 견인, 이론차 단속			●
5		교통불편신고	교통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시설물, 교통표지판 신설, 버스 정류장 신설 요청			●
6	도로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육교, 축대, 옹벽, 지하도 등			●
7		도로시설물 안전	도로침하·함몰·쌍그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8		도로불편사항	도로파손 등			●
9		보도불편사항	보도블록 정비 등			●
10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	
11		보안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12		가로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13		제설요청	(계절적 업무)		●	
14		자전거전용도로 불편사항	자전거 도로이용 불편신고(도로파손 등 신고, 건의제안			●
15		자전거보관소 불편사항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보관대 유지 보수			●
16	청소	쓰레기무단투기	불법 무단투기신고			●
17		규격부투 미수거	음식물, 생활쓰레기 등 미수거(비정상 배출시[확인 후 안내])			●
18		대형폐기물 미수거	신고 폐기물 미수거(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
19		가로청소요청	가로변 청소요청			●
20		재활용 수집 운반	재활용 미수거 등			●
21		정화조 관리	정화조 설치 및 준공			●
22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쓰레기 처리(1회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등)			●
23	주택 건축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건설기계 오작동, 건설자재 낙하 등 각종 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	
24		무허가 신고	무허가 건축물 신고		●	
25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	공동주택물 이용시 불편사항 등			●
26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27		주택가 감전위험	누전, 합선 등에 따른 감전사고 위험		●	
28	치수 방재	하수시설	하수도파손, 빗물받이, 준설 등		●	
29		하수도 맨홀	맨홀뚜껑불량, 손실 등		●	
30		수방시설물	수방관련 시설물			●
31		풍수해(침수)신고	풍수해, 침수신고, 하천범람 신고 등		●	
32		하천시설물	하천시설물(제육시설 등) 신고			●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33	가로 정비	불법광고물	불법 광고물 처리요청		●	
34		노상적치물정비	노상적치물 무단점용			●
35		노점상단속	노점상 무단점용			●
36	보건	방역요청	방역처리요청		●	
37		유기동물신고	유기견, 고양이 등 신고	●		
38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위생관련(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
39		위생불량 신고	위생불량업소 신고			●
40		원산지 위반 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신고			●
41		집단 식중독 신고	집단 식중독 신고			●
42		집단 급식소 관리	집단 급식소 관리			●
43	공원 녹지	가로수 녹지대 파손	가로수 녹지대 시설 파손, 가로수 전지작업 요청 등		●	
44		공원이용 불편사항	공원시설물파손, 보수요청, 공원청소상태불량, 등산로 불편사항 등 이용시민 불편사항			●
45		공원(약수터 등) 수질관리	공원 내 지하수 실태조사, 수질관리 등			●
46	환경	산사태	절토사면 등 산사태 발생 징후		●	
47		소음	공사장, 에어컨, 노래방소음 등		●	
48		악취	사업장 (폐유 등) 악취신고		●	
49		진동	공사장 진동 등		●	
50		매연	사업장 (대기배출신고사업소 등) 매연신고		●	
51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공사장 먼지관련 민원 등		●	
52		불법소각	불법소각 신고			●
53	경제 산업	환경오염	유독물질 유출, 오폐수 방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
54		불법통신판매업 유해신고	불법통신판매업 유해신고			●
55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			●
56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	대부업 피해 신고			●
57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관(구립체육시설) /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
58		여성불편	화장실, 수유시설, 기저귀 교환장소, 휴식공간 등			●
59		관광복지	문화재, 공연장, 전시장, 각종 복지시설 관련 불편사항			●
60		방범시설	CCTV(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등) 설치보수 등 불편사항			●
61		행사	행사(단가장기)장 이용 불편			●
62		행사장 안전	각종 행사장 안전 신고		●	
63		공중화장실불편신고	변기파손, 고장신고 등			●
64		소방안전	소방시설 점검 등			●
65	건의	건의제안사항	그 밖의 건의제안사항 등			●

※ 비고

- 1) 교통분야: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민원신고시 신고내용 또는 현장사진을 통하여 위반 일시·장소, 위반사항, 차량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즉시가 아닌 확인 후 안내로 변경할 수 있다.
- 2)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시설을 말한다.
- 3) 민원 처리지는 안전·위험신고 민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될 경우 각 기관(부서)이 수립한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별표 2>

제안민원 처리기준(제5조제1항제2호와 관련)

구 분	처리 기일	비 고
온라인 의견수렴	30일	
검토 및 제안 채택 여부 결정	처리부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현장민원 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 동일인의 정당한 사유없는 반복신고 또는 위반사항의 불특정 신고(허위신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반복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른 반복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불법주정차 신고시 구체화된 신고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요건 불충족시 처리기간(즉시)의 예외처리(확인후안내)가 가능하도록 함.
- 나. 신속한 민원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처리기한이 ‘즉시 처리’인 현장민원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현장에서 민원처리 후 담당자 전결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장민원 처리기준의 불법주정차 신고에 대해 구체화된 신고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신고 요건 불충족시 처리기간(즉시)의 예외처리(확인후 안내)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1)
- 나. 제안민원의 온라인 의견수렴 및 처리부서 검토 등의 처리기일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라 현행화함(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2)
- 다. 현장민원 처리기한이 ‘즉시 처리’인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담당자 전결기준을 규정함(제6조)
- 라. 반복민원의 경우 「민원처리법」 제23조에 따른 반복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그 처리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제6조의2 신설)
- 마. 민원 처리상황과 운영실태 확인·점검의 주체를 관리부서의 장으로 명확화하고, 우수한 공무원 및 기관·부서 등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22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등

2. 주요내용

-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관장’을 ‘원장’으로, ‘분관’을 ‘분원’으로 함(안 제2절, 제12조의2 ~ 제12조의5, 별표1)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전화 02 - 2282 - 8643

○ 이메일: kalismahan@sen.go.kr

4.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절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제12조의2 제1항 중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이하 “과학전시관”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이하 “융합과학교육원”이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한다.

제12조의3 중 “관장”을 “원장”으로,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제12조의4 중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제12조의5 중 “분관”을 “분원”으로,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한다.

별표1 제목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분관명”을 “분원명”으로, “남산분관”을 “남산분원”으로, “동부분관”을 “동부분원”으로, “남부분관”을 “남부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절 서울특별시교육청 <u>과학전시관</u>	제2절 서울특별시교육청 <u>융합과학교육원</u>
제12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 <u>과학교육진흥법</u> 」 제3조에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u>과학전시관</u> (이하 “ <u>과학전시관</u> ”이라 한다)을 둔다. ② <u>과학전시관</u> 은 서울특별시 ----- ----- -----	제12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 <u>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u> 」 제5조에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u>융합과학교육원</u> (이하 “ <u>융합과학교육원</u> ”이라 한다)을 둔다. ② <u>융합과학교육원</u> 은 서울특별시 ----- ----- -----
제12조의3(관장) <u>과학전시관</u> 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 -----.	제12조의3(원장) <u>융합과학교육원</u> 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 -----.
제12조의4(업무) <u>과학전시관</u>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8. (생략)	제12조의4(업무) <u>융합과학교육원</u>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제12조의5(분관) <u>과학전시관</u> 에 두는 <u>분관</u> 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2조의5(분원) <u>융합과학교육원</u> 에 두는 <u>분원</u> 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현행		개정안	
[별표1]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 분원의 명칭·위치 (제12조의5 관련)		[별표1] 서울특별시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 분원의 명칭· 위치(제12조의5 관련)	
<u>분관명</u>	소재지	<u>분원명</u>	소재지
<u>남산분관</u>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	<u>남산분원</u>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
<u>동부분관</u>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3길 20 (면목동)	<u>동부분원</u>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23길 20 (면목동)
<u>남부분관</u>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7나길 21 (구로동)	<u>남부분원</u>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7나길 21 (구로동)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223호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교육공무직원 채용업무의 지역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본청 통합 실시

2. 주요내용

- 교육감이 정원을 관리하는 공립학교 소속 교육공무직원 ‘교육장 채용 권한 해제’ (안 제5조제36호)
- 학교장 채용 권한 대상 ‘정원으로 관리하는 특수운영직군 및 기간제근로자’로 명확화(안 제6조제18호)
- 학교장 경징계(감봉·견책) 권한 대상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명확화(안 제6조제17호)
- 학교장 중징계(정직·해고) 권한 대상 ‘소속 학교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로 명확화(안 제6조제19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전화 02 - 2282 - 8645
- 이메일: ejej06@sen.go.kr

4.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붙임】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채용, 정직, 해고, 전보”를 “정직, 해고, 전보”로 한다.

제6조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승급, 복무, 평가, 감봉, 견책, 퇴직, 보수

1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가. 정원으로 관리하는 특수운영직군

나. 기간제 근로자

1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직, 해고

가.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나. 기간제 근로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 35. (생략) 36. 교육감이 정원을 관리하는 관내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u>채용, 정직, 해고, 전보</u>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 - - - - - - - - - - - - 1. ~ 35. (현행과 같음) 36. - <u>정직, 해고, 전보</u>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 16. (생략) 17. <u>제5조제36호에 따라 채용되는 교육공무직원을 제외한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휴직, 복직, 복무, 평가, 징계, 퇴직, 해고, 보수</u> 18. <u>제5조제36호에 따라 채용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승급, 복무, 평가, 감봉, 전책, 퇴직, 보수</u> <u><신설></u>	제6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 - - - - - - - - - - - - 1. ~ 16. (현행과 같음) 17. <u>소속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승급, 복무, 평가, 감봉, 전책, 퇴직, 보수</u> 18.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u> <u>가. 정원으로 관리하는 특수운영직군</u> <u>나. 기간제 근로자</u> 19.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직, 해고</u> <u>가.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무기계약직</u> <u>나. 기간제 근로자</u>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